

#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(안)

의안 번호	317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 .  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본예산 출연에 대한 하남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

## 2. 주요내용

-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: 464,000천원
  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,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한 자금 지원(이자차액 사업)

## 3. 세부내용

### 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6년 본예산	2025년	증감액		
1	경기도지사 (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)	464,000	464,000	-		

□ 출연대상 : 경기도(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)

- 설립근거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
- 설립목적 :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 
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,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 
위한 자금 지원
- 기능 및 주요사업
  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하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

□ 출연금액 : 464,000천원(2025년 464,000천원)

□ 출연근거
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
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

□ 검토의견

-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분담  
출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.
  - 경기도 지역금융과-7577(2025.7.29.)로 26년도 출연금으로 475백만원  
요청하였으나, 하남시 자금사정 고려 25년도와 동일액 편성
- ※ 요청액 : 756백만원(24년) → 554백만원(25년) → 475백만원(26년)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## 제4조(기금의 조성)
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1. 중앙행정기관, 경기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 및 시·군의 출연금 <개정 2012.1.5.>
  2. 기금운용 수익금
 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<개정 2012.1.5.>
  4. 그 밖의 수입금
- ②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